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용어 및 그 정의가 적용된다.

제6.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제거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 다.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및 적용에서 투명성, 협력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나.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3.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때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6.4조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제6.5조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과 그 후속본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 각각의 국가 표준화 기관은,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러한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제6.6조 기술규정

1.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한,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4.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한,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준의 국제 인정 협정 및 약정의 인정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증진

다.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장려

라. 적절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마. 인정 절차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의 조화, 또는

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메커니즘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가 수용되도록 보장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서로의 적합성 평가결과의 일관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7.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지정하거나 달리 인정한다. 당사국이 특정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자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지정하거나 달리 인정하면서 그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지정하거나 달리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거절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 가. 각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대 및 각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
- 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강화
- 다.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통한 무역 촉진, 그리고
- 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 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 강화

2.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대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한다.

- 가. 위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기초로 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 나. 양국의 기술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정보 교환

-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 그리고
 - 라. 적절한 경우, 시장 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표준화, 적합성 평가 및 인정을 담당하는 각국의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분야별 제안을 고려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모든 분야별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저압 장비 및 신기술 분야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개발된 표준과 같은 국제 표준의 조화 및 사용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 인증을 위한 기초로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국제전기기기 인증 시험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또는
 - 다.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 또는 그 승계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시험 실 운영기준(OECD GLP)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를 포함하여,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인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6.9조
특명성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를 포함한 정보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2. 제안된 기술규정이 WTO에 통보된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합치되게, 자국이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제안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도록,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기술규정 또는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문서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10조 기술 논의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 우편 또는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기술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의 접수 후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 논의를 개시한다. 기술 논의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3. 요청 당사국은 긴급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술 논의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른 기술 논의는 제17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제6.11조

연락처

1. 이 장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상,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표준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연락처가 이 장과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응하여 양 당사국 간 그러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